

앞으로의 운정프리미엄은 GTX-A로 부터! 우미린으로 붙어!

#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Lynn 더 센텀

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통해 청약자격,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구분	내용																	
대상자	<p><b>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1. 03.)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b></p> <p>①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② 무주택세대구성원</p> <p>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p>																	
신청자격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추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해당기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 <td rowspan="2">청약통장 필요없음</td> </tr> <tr> <td>장애인</td> <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td> <td>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 <td rowspan="4">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td> </tr> <tr> <td>10년 이상 작기복무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td> </tr> </tbody> </table>	구분	해당기관	비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	10년 이상 작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구분	해당기관	비고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 가입 및 자격요건 충족																
10년 이상 작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유의사항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9호 미적용)</p> <p>-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p>																	

※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